

#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513호  
2019. 3. 28.(목)



◆ 서울특별시조례 제7050호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관·관리되고 있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하여 시장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함 (안 제10조제1항 신설).

나.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장은 본인의 승낙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함 (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의무를 규정함 (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시장에게 홈페이지 수록 개인정보를 암호화 저장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제4항 신설).